

Monthly Legal Update - 2022. 10.

DR & AJU LLC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최신 판례

2022도34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2.6.9.)

◆ 사안의 개요: 맨홀과 연결된 지하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내부 철제 폐기물 등을 절단하기 위해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던 작업 인부 3명이 사망하자,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공동수급회사 2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한 사안

◆ 쟁점:

(1) 사고장소가 오염된 흙, 썩은 물, 오수 등에 의하여 질식,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하여,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밀폐공간 작업 중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2) 고압산소절단기 사용이 불가피하고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1심: 유죄(각 벌금 1,500만원), 원상: 공소장변경으로 제1심 파기하고 다시 유죄(각 벌금 1,500만원) 선고

입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사고의 정보와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등 조사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의무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A2T0JBUX2501M4I4H2B2M4C6T5C0

◆ 관련판례

2020도9188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나아가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함

주요 이슈

[한겨레] '끼임사고' 대국민 사과한 sfc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할까?
[헤럴드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노동자 사망, 작년보다 더 늘다

공정거래

최신 판례

2021두3372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대법원 선고일자:2022.9.29.)

◆ 사안의 개요: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탁상 자문의 제공을 금지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포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

◆ 쟁점: 원고의 행위(문서탁상자문 제공의 금지)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1심: 공정거래 사건이므로 해당 없음, 원상: 원고 승소(원고의 행위가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입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정유사가 각 지역에 판매한 석유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이 보고 항목에 추가 및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도매가격을 시도별로 공개하도록 함
<https://opinion.lawmaking.go.kr/qcom/cql.mPp/101/12?pagenIndex=3>

◆ 관련판례

2014두12017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

- 판시사항: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와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관세청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상 부과금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 환급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 해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환급금의 산정 기준을 정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와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관세청 고시) 규정을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판결요지:

[1] 구 산자부 고시와 구 관세청 고시의 각 규정들은 '환급금의 환급기준 내지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을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과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2]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 환급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됨. 따라서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및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 규정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주요 이슈

[중앙일보] 제2의 카키오 사태 막는다...인철수, 독점규제 일부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출혈,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청구소송 제기

행정·노동

최신 판례

2019다299065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선고일자:2022.9.26.)

◆ 사안의 개요: 피고로 합병되기 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였고, 그중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정직원(계약직) 재채용'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원고들(79명)은 1959년 하반기 출생하여 2015년 하반기 중 56세가 도래하였는데,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2015. 11. 30. 자로 퇴직하였음. 이후 피고와 원고들이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①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와 계약직 별정직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② 고용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②-1) 제1예비적 청구로서, 원고들에게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채용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며, ②-2) 제2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재채용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 쟁점:

- (1) 특별퇴직 합의에 계약직 별정직원 고용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까지 포함된 것인지
- (2) 원고들에게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 (3)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4)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의 해석상 피고에게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등

-1심: 원고 일부 승, 원상: 원고 일부 승

입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 시 협회 가입을 의무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Q2S0Y9I2U1B1Q6K4M0Q3Z4K9O5X5

◆ 관련판례

2018노4066 공인중개사법위반

- 판시사항: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용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 판결요지: 피고인 乙은 임차인 丙에게 원용을 소개한 후 丙으로부터 가계약금 및 선지급금 1년분의 월세를 받았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중개인으로서 날인을 하였으며, 丙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甲을 만난 적이 없었음.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들은 계약금액이 적은 원용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소개 및 계약 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이 사건의 경우 80%)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함.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중개수수료 금액이 적은 원용 임대차계약과 아파트, 상가 등의 매매계약 등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더구나 피고인 乙이 기본급 없이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으면서 계약 과정 전반에 피고인 甲의 별다른 관여나 지시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해 온 이상 피고인 乙의 계산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주요 이슈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공사 "화차사 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헤럴드경제] "노조법 2조, 손해금지법 하나...근로자·사용자 개념 개정해야"

조세

최신 판례

2020두47397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선고일자:2022.10.27)

◆ 사안의 개요: 국내은행(원고의 수탁은행)들은 원고(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외국법인)에게 국내 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일반세율(20%)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음.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에게, '원고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일반세율이 아니라 한미간 조세 조약상 제한세율(15%)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음. 과세관청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국외투자기구(외국법인)에 투자한 개별 투자자들 외에 국외투자기구 자체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규정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소 각하, 원상: 소 각

입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 연장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C2X0N8D3A0F1W7D1U9G2B6V4Y6PE

◆ 관련판례

2018구합5431 법인지방 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 판시사항: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함.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액공제를 받았음.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 그러나, 관할관청이 이를 모두 거부한 사안.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으로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으로 불산입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4항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음.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가 제57조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취지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때문인데,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 외국법인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없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가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보는 데에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뒤따른다는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음. 따라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문언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요 이슈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긍정적'
[매일경제] 현실로 닥친 보유세 폭탄...조세저항 더 커진다

IP

최신 판례

2022다223358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2.10.14.)

◆ 사안의 개요: '변형 가능한 기계적 파이프 커플링'을 명칭으로 하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보유한 원고가, 파이프 커플링 세그먼트들에 관한 것으로 '파이프 요소'를 제외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7, 9 내지 12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품 실시의 금지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쟁점: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함

-1심: 원고 패, 원심: 원고 패

입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 각종 등 영상을 저작자가 제작자 등 타인에게 IP를 양도한 경우에도 콘텐츠를 최종 제공하는 발송사·극장·OTT 등을 대상으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U2T009K1B5A1S0D4R4Q3V5H1Z4F4

◆ 관련판례

2019가합540744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 판시사항: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丙과, 甲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乙과 丙이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甲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함. 乙과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甲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乙과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 제1심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乙과 丙의 저작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乙과 丙이 甲 회사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과 丙이 甲 회사에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甲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乙과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甲 회사가 乙과 丙으로부터 받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乙과 丙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게시행위가 乙과 丙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주요 이슈

[헤럴드경제] '무료 음악 서비스?', 한음저협, '음악 가치를 훼손하는 마케팅' [아시아경제] 100억 시장 '초코파이', '대박난 불닭'... 상표권 잃은 사연[지식재산권이 경쟁력]

금융

최신 판례

2020도1256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대법원 선고일자:2022.10.27.)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정범)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불법 환전 업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 검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는 혐의로 금융실명법위반방조로 기소함

◆ 쟁점:

- (1) 무등록 환전 영업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범이 목적으로 삼은 행위(=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와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 중 그 부분의 내용(= 무등록 환전 영업)이 다른 경우, 방조죄 성립의 요건인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1심): 무죄

입법(안)

[가상자산법안]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정의를 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몰수 추징까지 할 수 있도록 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A1Q005E0K6X1U1B3T2Y5U0V1T5Z0

◆ 관련판례

2020나2016462 매매대금

- 판시사항: '甲 회사는 乙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丙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기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함.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 제1심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甲 회사가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절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乙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甲 회사가 암호화폐를 丙에게 보관시킨 것만으로는 그 보관행위가 계속되어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를 甲 회사에 의한 이행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 자체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1심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음. 甲 회사가 乙 회사와 매매대금 지급기한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협의의 최종 결렬 시점에 이르러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함.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절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乙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요 이슈

[서울경제] 한은, 6조 RP 매입...자금난 진화 총력전 [파이낸셜뉴스] 은행 예대를 규제 6개월 한시 완화

담당 변호사 및 전문 인력

BD 총괄본부



차동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중대재해



김경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

공정거래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행정·노무



김광수
파트너변호사
T : 02-3016-7405
E : kskim2@draju.com

조세



김신희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57
E : shiny@draju.com

IP



최종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88
E : jschoi@draju.com

금융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